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7. 11. 15.(수) 09:43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43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3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7-40-239)

○ 이효성 위원장

- 그럼,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용자정책국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 김종영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담당 국장께서 국회 예산 설명을 위해 가 계신 관계로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솔루엠, (주)코엑스, (주)피플카쉐어링, (주)에이스개발 총 4개 법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가한다. 허가조건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7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경과사항입니다. 2017년부터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허가신청 및 공고·접수를 통해 (주)솔루엠 등 총 7개 법인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허가신청법인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임원결격사유 조회 및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허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위원 명단은 재무 분야 1명, 영업 분야 4명, 기술 분야 4명 이렇게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명단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심사기준입니다.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총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받았을 때 적격 판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주)솔루엠, (주)코엑스, (주)피플카쉐어링, (주)에이스개발 총 4개 사업자를 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로드피아, 텔레나브코리아(유), (주)창하 등 3개 법인에 대해서는 심사사항별 점수 및 총점 미달로 부적격 판단하였습니다. 허가 신청법인별 세부 심사결과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적격 사유입니다. 부적격으로 판단된 사업자별 주요 미흡사항입니다. (주)로드피아는 재무구조의 적정성 측면에서 투자 소요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이 부족하여 미흡으로 판단하였습

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개인위치정보 관리계획 및 보호계획 등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서 미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텔레나브코리아(유)에 대한 미흡사항입니다. 설비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위치정보 시스템 확충 계획 및 설비투자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미흡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측면입니다. 위치정보 보호 계획이 구체적이고 않고 신청법인과 본사 간 책임과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미흡 판정하였습니다. (주)창하의 미흡 사유입니다. 재무구조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자금조달 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되어서 미흡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설비규모의 적정성 측면입니다. 위치정보 시스템 구성 계획이 미흡하고 예상 소요설비 산정 및 이에 따른 투자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미흡으로 판정하였습니다. 다음 허가조건입니다.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심사결과를 위원회 심의·의결 직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허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부적격 판정받은 텔레나브코리아의 경우에 차량위치정보 수집을 통한 네비게이션 및 차량 관리 서비스 계획을 제시했었는데 사업자는 사물위치정보만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준하는 높은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주장대로 수집하는 정보는 사물위치정보로 수집하는 것이 맞는데 현행법상으로 사물위치정보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완화하는 법안 개정을 준비 중에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동일한 허가기준을 적용받고 있고, 참고로 이 사안의 경우에 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사물위치정보이기 때문에 위치정보보호 수준이 완화되어도 된다, 이런 관점에서 논의가 되었다기 보다는 재정계획이나 설비규모나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이 전반적으로 본사와 텔레나브코리아 간의 서비스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분담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주장은 그렇게 하셨지만 심사 내용을 보니 굉장히 꼼꼼하고 적절하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정보도 개인정보의 일부로서 악용에 따른 사회적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여기에 나왔던 대로 관리적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이행실적 점검이 철저히 추진되어야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APEC CBPR 국내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가> ‘APEC CBPR 국내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정책국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영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APEC CBPR 국내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증가에 대응하여 아·태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APEC CBPR를 2017년 6월 가입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인증기관 지정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CBPR이란 Cross-Border Privacy Rules로서 국경 간 정보 유통의 책임성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2011년 APEC이 개발한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자율 인증체계를 말합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11년 행자부와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 간 프라이버시 법 집행협정(CPEA)에 가입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APEC CBPR 가입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자부가 APEC CBPR 가입 신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금년 6월 1일 APEC이 대한민국의 CBPR 가입을 승인 통보하였습니다. APEC CBPR 인증체계 구성입니다. 인증체계는 APEC CBPR 회원국의 개인정보 CBPR 회원국의 개인정보 법 집행기관이 CBPR 가입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후속조치로서 국내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안부가 법 집행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안부가 한국의 CBPR 인증기관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국내 인증기관에 대한 APEC의 심사·승인 후 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의 CBPR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증기관 지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APEC CBPR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역할을 수행해 온 바, 인증심사 전문기관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PIMS와 세부 인증기준을 연동하고, 심사 절차 통합 운영, 심사원 인력 공동 활용 등 효율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증운영입니다. 기업이 자율 신청하고 인증기관이 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인증기업이 인증사항을 미이행할 경우에 인증기관에서는 개선조치를 권고하고,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인증절차는 PIMS 인증절차를 바탕으로 APEC 요구하는 요건을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신청기관의 자가진단 결과 및 증빙자료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 단계에서는 서면으로 법적, 관리적 요소, 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증단계에서는 인증위원회 심의 및 인증결과를 공표하고, 네 번째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중 정기 또는 수시로 인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인증 단계에서는 인증 유효 기간(1년) 연장을 원할 경우에 재인증 심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단계에서는 이용자 분쟁 해결 및 인증사항 미이행 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심사 항목입니다. PIMS 인증기업의 재인증 부담 최소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APEC CBPR 필수 기준 50개 중 PIMS와 유사한 44개에 대해서는 PIMS 인증기준을 활용하되, 6개 항목에 대해서만 별도의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해외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국내 인증기관을 채널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국내외 인증기관 및 법 집행기관과 협력·공조를 통해 효과적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인증기관 지정 및 승인에 따라 국내기업이 CBPR 인증을 받는 경우 국제 신뢰도 향상을 바탕으로 외국인 개인정보의 국내 이전이 용이해져서 해외지사 설립 등 진출이 유리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인증기관 지정 및 APEC에 인증기관 신청서를 금년 12월에 제출하고, 인증기관 APEC 승인에 따른 모의 인증 심사를 2018년에 실시하고, CBPR는 인증 운영을 2019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기대효과에 나와 있다시피 CBPR 인증이 도입되면 무엇보다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국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나 해외에 있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국내로 이전될 때 상호간에 더욱더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면에서 보면 대단히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시점이 '19년 도입니다.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내년은 모의 인증 심사인데 모의 인증 심사를 사전 준비단계로 봐야 하는 것이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모의 인증 심사 단계를 잘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19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는 사전 준비가 본 제도 운영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 인증 심사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

- 국내에서 현재 자율인증체계라는 PIMS 시스템은 86개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APEC CBPR 시스템은 현재 가입된 나라가 다섯 나라밖에 없고, 미국은 20개 정도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1개 기업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검토해 보고서 국내 제도 현실에 맞는 것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 1년 정도 검토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많은 기업들이 가입했다면 국내도 빠른 도입을 통해 절차를 가져갈 텐데,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APEC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중시 여겨서 미국을 위시해서 APEC 회원국 대부분이 CBPR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좌우지간 한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해서 본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위원장님께서 다음 주에 EU GDPR 적정성 평가 관련 출장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주도의 APEC CBPR과 EU 주도의 EU GDPR에 우리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기업들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내법에서는 개인정보수집이나 이용 제공에 있어서 동의 원칙과 달리 CBPR은 고지와 선택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두 제도의 개인정보보호 접근방법이 다소 다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

- 저희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서 법·제도나 운영상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낀 소감으로는 글로벌 쪽으로 보면 과거에는 EU 중심으로 해서 보호 일변도였는데 최근에는 4차 산업 측면에서 보면 각 나라가 활용 쪽에도 상당히 무게 추를 이동한 것 같습니다. 보호하면서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활용 쪽에 많이 제도를 완화시킨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까지도 많이 보호 측면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EU 적정성이라든지 APEC CBPR은 현재 과거에 비해 무역이나 금융 이런 부분이 국경 간 이동이 많았는데 최근 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의 이전이 상당 부분 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자국의 산업과 연동이 돼서 우리도 아마도 법·제도 개선을 통해 활용 쪽에 무게를 빨리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런 면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에서도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CBPR과 국내 PIMS 연계 운영방안 마련 등이 국내 제도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에 보면 ‘국내 CBPR 인증 체계 구성 및 해외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은 외교부가 정부대표이고 외교부와 관계가 없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2개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상무부가 정부 대표로 되어 있고, 상무부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일을 맡고 있고,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정부대표로 되어 있고 경제산업성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돼서 일원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부대표는 외교부로 되어 있고, 개인정보 법 집행기관은 하나도 아니고 2개로 되어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

- 자료에서 보시면 아까 CPEA 협정에도 보면 9개국 10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서만 행자부와 방송통신위원회 2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자체가 일반법은 행안부를 담당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저희가 맡고 있다 보니까 같이 논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 때문에 혼선은 없습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

- 아직까지 혼선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노력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CBPR 인증체계 가입을 할 때 제3기 방통위에서 사전보고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부대표는 외교부가 하고,

또 개인정보보호 법 집행기관은 2개의 기관이어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와 업무 협의를 할 때 인증기관인 KISA로 오면 간단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개인정보보호 법 집행기관으로 직접 왔을 때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업무협약이 되는 것이냐? 한쪽에서 받게 되면 다른 쪽에 통보해 주어야 하고, 그런 업무 협조체계를 점검해서 구축해 주기를 제3기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이후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궁금증이 해결되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

- 아직까지는 저희 위원회 차원보다도 여기에 개보위도 들어가다 보니까 개보위,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가 다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례에서 보면 일본은 16개 성청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EU 적정성 때문에 '15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CPEA 협정에 보면 9개국 25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일본이 하나로 통일해서 나머지 기관이 다 빠진 것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 차원보다는 국내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저희도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 보면 추진경과가 두 번째에 있지 않습니까? APEC CBPR 가입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이것은 가입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였고, 그때 제3기 위원들이 이야기하신 것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입이 인증이 돼서 운영할 때 부처 간 협의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협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행실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

-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것이니깐 그것을 해 주시면 간단합니다.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은 언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단일화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특히 외국에서 한국에 접촉할 때 혼선이 빚어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원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전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 하겠습니다.

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송 등의 미실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는 재난방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이 재난방송 요청 당시에 사후 피해 수준을 예정하기 어렵게, 경미한 피해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위임규정에 벗어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 시행 개정령 개정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난방송 등의 준수사항과 무관한 조항 등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4조(주관방송사의 권한) 및 제5조(주관방송사의 임무)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재난방송 등의 준수사항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제6조를 개정한 제4조로 하고 준칙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항에서 제5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③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제3항에 재난방송 요청 즉시 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는 재난방송 시 방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진·민방위 사태 등 긴급한 재난발생 시에는 방송사가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또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음 송출의무, 영어자막 송출의무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고시조항 삭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의 재검토기한 규정도 재검토기한을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11월 중에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규제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마무리 하는 대로 위원회에 다시 안전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을 또 고시를 개정해서 보완하겠다는 내용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진즉부터 해서..., 지난번에 지상파방송사들이 일제히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규정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확실하게 규정을 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다음에 방송에 어떤 내용을 꼭 담아야 된다는 부분과 또 긴급 재난 때는 즉시 확인절차 없이 바로 곧장 방송하도록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잘 됐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막과 차별화해서 크기를 크게 차별화한다든가 색상을 빨간색 바탕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난방송이 너무 빈번하게 자주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당국과 부처 협의를 할 때 당연히 재난방송을 요청할 때 그 항목을 주의보, 경보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부처 협의가 꼭 긴밀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라디오방송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방송을 중단하고 재난방송을 그대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정규방송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규모 5.0의 지진이나 민방위 경보는 당연히 즉각 방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안개주의보나 동해 먼 바다의 풍랑주의보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매뉴얼 가이드라인과 고시 개정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지금 자율조항이 많지 않습니까. 자율로 규정한 부분이 많은데 어느 부분이 자율로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로서는 자율로 바뀌는 것은 방송의 형식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규정이 없다가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고시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보나 주의보 발령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와 관련기관들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경보 이상 단계에 대해서는 재난방송 의무사항으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보도 약간 경중을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종편PP도 지상파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것은 고시사항은 아니고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이 2011년도 종편 출범 전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시부터 개정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편이 없었기 때문에 종편이

없어서 이번에는 고시 개정 이후에 같이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종편도 지상파와 동일하게 TV매체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규정하려고 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라디오 매뉴얼을 별도 규정한다고 했는데 재난별로 음성안내, 뉴스 보도, 특보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라디오 같은 경우는 TV와 다르게 자막이 아니고 음성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TV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막 유지 시간이라든지 언제 해야 하고 특보나 이렇게 전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음성안내에 맞게 라디오도 TV와 같은 의무로 같은 수준의, 다만 형식이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매뉴얼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사업자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현실성 있게 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고시안을 접수해 주시면 오늘부터 의견 협의 거치고 또 고시안 개정 의견 협의 거치면서 매뉴얼에 대해서도 사업자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재난방송 준수사항 규정 신설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혼선도를 많이 줄이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번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라디오 방송이나 특히 지역방송 같은 경우 매체별 특성에 따라 여기에 관련된 고시가 세세하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디테일하게 의견을 받아서 무리가 없고 또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처리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것은 매뉴얼 정할 때 고시에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 들어가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매뉴얼에 정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매뉴얼 정할 때 의견을 받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동요령까지 알리게 되어 있는데 풍랑정보를 발령하면 행동요령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행동요령이라는 것은 운영할 때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것도 매뉴얼에 특히 라디오 같은 사업자들은 음성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이나 행동요령이 길 경우에는 그런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축약해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그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와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8월까지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방송사, 학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이 고시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편성고시 제3조제3항 본문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의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문을 정비합니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편성고시에 따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제작물로서, 방송사업자에게 편성의무로 부과되는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의 정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동 조의 단서조항은 제작비 절감을 위해 실사영상으로 애니메이션 분량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개정내용입니다. 편성고시 제3조제3항 본문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단서조항을 아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창작 분량 최소비율을 규정합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고시에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신규로 창작해야 하는 분량이 명시되지 않아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사는 이미 제작된 국내 애니메이션 화면을 재활용해서 만든 애니메이션도 국내 제작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제작 업계는 반대하는 등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규창작 비율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애니메이션 업계의 제작 현실과 신규창작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고려하고 학계, 업계, 방송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영상 중 최소 70% 이상이 신규창작 분량일 경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명시합니다. 경과규정입니다. 고시 시행 후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애니메이션 제작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6개월의 경과규정을 부칙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11월에 하고, 위원회 의결, 관보게재 및 시행을 거쳐 12월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이 법 고시 개정하는 배경이 국내 산업 보호 내지는 애니메이션 창작산업의 활성화와 같은 이러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방송사는 재탕, 삼탕 해서 기존에 제작된 것을 많이 틀고 싶어 할 테고, 업계 창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좀 더 많이 그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현재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게 되면 현재 국내 제작물을 방송사들이 틀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물로 인정받으면 국내 방송사에서 방송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해서 관련 산업의 종사자들이 일자리가 늘고 수입이 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창작하시는 분들 수준이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인데, 우리가 손재주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국내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이 거의 시장에서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 애니메이션에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많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방송하는 시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편성에 관한 것인데 편성시간은 방송기반국 관할은 아니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편성시간은 저희 방송기반국 소관이긴 한데….

○ 김석진 상임위원

- 평가는 할 수 있지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그런데 시간대를 지정하는 것은 방송사들 편성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개 종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틀어야 될 분량은 지켜져야 하니까, 애니메이션은 주로 아동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야시간에, 새벽시간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냥 땀방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도를 해서 어차피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봐주어야 산업이 진흥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를 해야 하는데 국이 다르다면 사무처장님께서 방송정책 내지는 지원과에 그런 부분의 행정지도를 어떻게 펼 수 있는지를 협의할 때 처장님이 지휘를 해서...

○ 조경식 사무처장

- 알겠습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위원님들 방송기반국 소관이 맞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많이 봐야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슬쩍 틀고 마는 것이 없도록 잘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소관이 어디지요?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주로 문체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편성정책은 우리 소관이고, 물론 이것을 개정할 때는 문화부와 부처 간 협의는 합시다만,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애니메이션 제작사들과 위원회 간 의사소통 자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견제시하는 것이 원활치 않다는 의견도 들어옵니다. 물론 금년 상반기에 6개월에 걸쳐 제작사, 전문가, 방송사들 의견을 다 들었고 또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면 일정 기간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혹시 6개월 동안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견이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까?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저희가 현재도 실무적으로는 신규 창작물의 80% 작화를 만드는 것을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면서 오히려 10% 줄여 줬기 때문에 사업자들끼리 조율이 된 비율이라서 특별한 비율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강학적으로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을 분리해서 방통위를 규제기관이라고 보고 있는데, 규제의 일정 비율을 완화한다든가 특정 파트를 강화하게 될 경우에는 방통위가 진흥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의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애니메이션 사업의 전후방 관련된 산업 어떤 파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까?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일단 작화 시장에서 기존의 작화를 재활용하는 것보다 신규 작화를 그리게 되면 일단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고용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신규 창작 분량 최소 비율을 사전에 명확히 한 것은 그 제작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선 광고시장이나 완구시장에까지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주축인 키즈존 시간대 광고 판매 실적이 연간 200억원 이상 자체 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키즈존 시간대의 주요 광고주들을 보면 미니월드, 손오공, 레고코리아 등 완구업체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산업 연관효과까지도 고려해서 그 분야 의견까지도 수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안건은 아니지만 논의사항이 하나 제기가 돼서 논의해야 할 것 같고, 그 사항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27분 】

8-1. 기타 논의사항 (비공개)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6분 폐회 】